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8.(월) 12:00 (화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1. 25.(금)
담당 부서	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	책임자	과 장 윤준현 (043-830-4210)
		담당자	사무관 정민선 (043-830-4238)

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한다

- 제11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모집 -

-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(원장 박봉균)은 화학물질 관련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‘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(이하 온라인 감시단)’ 제11기 단원을 11월 29일부터 모집한다.
 - 온라인 감시단은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, 인터넷상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폭탄 제조법 등을 찾아내어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.
 - 매달 신고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,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감시단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화학물질안전원장상을 수여한다.
- 제10기 온라인 감시단은 올해 10월까지 각종 불법유해정보 1만 5,048건을 신고했고, 이중 시안화칼륨(일명 청산가리)를 이용한 자살 유발 게시글 등 4,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 - 또한 감시단에서는 ‘화학물질관리법’ 제28조의 2에 따른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시약판매 사이트 5곳을 적발했고, 유역(지방)환경청이 과태료 처분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었다.
 - *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
 - 이러한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신고 건수는 43%, 삭제 건수는 203%가 증가한 것으로, 감시단원들이 검색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게시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결과다.

- 이번 온라인 감시단 모집공고와 세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(nics.m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“국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 감시단이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고, 화학물질을 이용한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화학안전을 강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2023년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계획.
2. 2022년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활동실적.
3. 질의응답.
4. 전문용어 설명. 끝.

□ 목 적

- 인터넷상에 불법·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감시·차단하기 위해 '11. 9월부터 사이버* 감시단 발족·운영
- ※ (근거) 「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」 (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94호)
- * '21년 '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'으로 명칭 변경

□ 경 과

- '11.9.26~'21.12.31: 제1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(20명)을 시작으로 제9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구성·운영완료(50명)
- '22.1.1~12.31 : 제10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구성·운영(50명)

□ 개 요

- 운영기간 : '23. 1. 1 ~ '23. 12. 31
- 활동인원 : 일반국민 50명
- ※ 5개 심사항목(전문성, 인터넷 활용능력, 유사경험, 업무이해도, 적극성) 충족자 선발

□ 역 할

-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및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숙지
- 포털 사이트, 폭발물 사이트, 각종 SNS, 화학물질 불법 유통·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활동 전개
- 의심사례 발견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
- ※ 화학물질안전원 신고페이지(<http://icis.me.go.kr/ccst>)

□ 근 거

- 사제폭발물
 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총포화약법) 제2조제3항 제1호 “가”목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
 - 총포화약법 제8조의2(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·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·유포를 금지)

○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

-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(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) :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
-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(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) : 시약판매자는 구매자에게 ①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, ②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함
-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(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) :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·제공 금지

□ 운 영

- (위 축) 임기 1년으로 활동실적과 기여도 평가로 우수자 재위촉
- (신 고) 사제 폭발물, 연막탄 제작·시연 영상 및 게시글,
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불법유통 사이트 검색과 모니터링
- (평 가) 감시단 신고실적 검토·분석
 - 신고사례를 유해정보, 일반 과학지식정보, 단순 호기심 유발 등 구분
 -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의심사례 게시물을 관련 사이트에 삭제요청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삭제조치 요청
- (포 상) 활동 우수자는 환경부장관 및 화학물질안전원 상장·상금 수여
-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명감 및 공감대 형성
- 환경 우수시설 및 유관기관 견학 등으로 사기 진작 등

□ 계 획

- '22년 신고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('23.1)

□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활동 실적

- (최근 3년 실적) 총 46,595건 신고, 이 중 의심사례 34,506건, 삭제 7,414건
- (10기 실적) 총 22,908건 신고, 이 중 의심사례 15,048건, 삭제 4,147건(10.31기준)

<기수별 감시단 누적 활동 실적>

기수	인원	감시기간	신고	의심*	삭제**
합계			46,595	34,506	7,414
10기	50	'22.1.1 ~ '22.10.31	22,908	15,048	4,147
9기	50	'21.1.1 ~ '21.12.31	13,690	11,662	1,718
8기	50	'20.1.1 ~ '20.12.31	9,997	7,796	1,549

* 의심: 신고건 중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정보로 판단한 건

** 삭제: (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삭제) + (해당 사이트 자체 삭제)

□ 유해정보 신고 사례

- 질산염, 과염소산염 등을 혼합하여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
-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, 메탄올, 니코틴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자 실명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내용
- 청산가리, 아질산나트륨을 자살 목적으로 트위터 등 인터넷에 판매하는 게시물
-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('해피벌룬')를 불법유통하는 게시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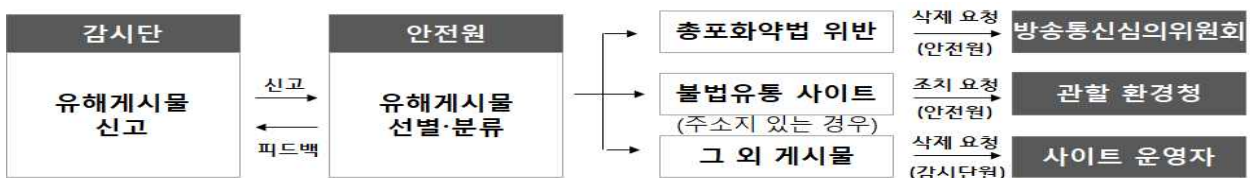
1.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구성과 선발 기준은?

-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응모자에 대해 적격성 심사 후 선발합니다.
※ 심사항목 : 인터넷 활용능력, 전문성, 유사경험, 업무이해도, 적극성
- 23년도 활동할 제11기는,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련 전공학과 재학·졸업자 우선 선발 계획입니다.

2. 활동과 인터넷 불법 게시물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나?

- 감시단원이 자율적인 감시활동 실시 후 전용게시판에 신고하면, 신고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사후조치하게 됩니다.
- 안전원은 신고·접수된 의심사례를 검토·분석하여 선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심의·삭제 요청, 유해정보 자체삭제 및 관할환경청 사후조치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업무 처리 절차



3. 유해정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?

- 폭발물로 분류되지 않는 폭죽, 로켓, 퓨즈 등의 제작과 시연영상, 질산칼륨 등 유해화학물질 합성·분리 등의 화학반응 영상 및 총기·

대포와 그 외 폭발물 등의 단순 시연 영상은 대상이 아닙니다.

- 불법유통의 경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호기심 유발글이거나 함량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.

-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: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 유통과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에 관련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촉된 네티즌

- 유해화학물질 :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물질